



# Monthly Tax Newsletter

---

Issue 123 | September 2024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 Contents

## 법인세법

4

- [판례]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조세특례제한법

8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9

- [예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 [판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국세기본법

14

- [심판례]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기각)

## 지방세법

16

- [심판례] (합동)쟁점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취소)

## 관세법

18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 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법인세법

**[판례]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사안]**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로, A은행의 완전모법인으로서 A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 甲은 ‘A은행과 乙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B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A은행과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관련 민사사건”)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A은행과 乙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A은행이 甲에게 15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음.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A은행은 甲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음.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甲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A은행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A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동종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조의 2 내지 제38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A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코멘트 ]**

-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지출하게 된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누46051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8(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상판결은, 위 집행기준과 달리, 법인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3서10049, 2024. 7. 29.

**[사안]** 청구법인은 2018년 11월 현재 모회사(“A사”)와 함께 관계회사인 B사 발행주식의 약 96.6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B사는 2018. 11. 30.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균등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 및 A사는 이에 참여하여 각각 B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을 증자대금과 상계(“쟁점유상증자”)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신주 28,107,868주(“쟁점주식”)를, A사는 신주 20,217,094주를 각각 교부받았음. 한편, B사의 실적부진이 계속되자 청구법인과 A사는 2019. 12. 3. B사의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청구법인과 B사의 합병을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을 1:0.4896347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을 합병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쟁점합병”)을 실시하여 기존 B사의 주주에게 그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음. 쟁점합병 후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등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인 주식(지분)의 연속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비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202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해오다가, 2022. 11. 3. 쟁점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2019~202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음.

**[판단]** 이 건 쟁점합병의 경우, B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사는 쟁점유상증자 전에 B사의 지분 96.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유상증자 후에는 97.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쟁점합병 직전에는 기타주주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쟁점합병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지분 구성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B사 지분의 약 97%를 보유하고 있던 A사와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이 있기 약 1년 전 B사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구주 취득방식이 아닌 (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경우 주식취득에 대한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합병 등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미리 매각하였다거나 합병법인(청구법인)이 합병대가(합병교부금)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합병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피합병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쟁점합병 후 청구법인에 흡수되므로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모순이 발생한다)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합병에 대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의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포합주식’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음.

**[ 코멘트 ]**

- 처분청은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심판례는 대법원은 과세특례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국세청도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과세특례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서면-2017-법령해석법인-0910, 2018. 2. 21.) 등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아니함.
- 2012. 2. 2. 개정된 금전교부 의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3항은, 합병포합주식에 대해 합병교부주식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며, 2년 이내 취득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 8. 1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조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음.

#### [ 코멘트 ]

- 동일 쟁점을 다룬 국세청 예규(사전-2023-법규법인-0184, 2024. 8. 28.)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2021. 3월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룹 계열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2022. 11월경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주들로부터 피인수법인의 지분을 매입하였고, 피인수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통해 “22. 11월부터 7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그룹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음.
- 조특법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은 공제요건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기준총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인수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되는 경우 인수법인(갑)과 그 피인수법인(을)의 임원(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①갑이 을의 지배주주가 되고 ②갑의 주식취득 이후에도 병이 을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여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병이 을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제4호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조특령 제11조의 4 제6항 및 제7항; 법인령 제43조 제7항 및 제8항; 법인령 제2조 제8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예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542, 2024. 8. 27.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 [ 코멘트 ]

- 질의법인은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부가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을 정의하는 한편,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를 이어받아 사업장의 범위를 표의 형식으로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대상 예규는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 제9호(무인자동차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나 제12호(「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사안]** 학교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2. 7. 4. 완공된 건물(“이 사건 빌딩”)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중,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빌딩을 2007. 1. 23.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관계회사에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매각대금을 그 취득가액의 원천에 따라 비출연재산분과 출연재산분으로 안분하여 비출연재산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재산분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사건 매각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매각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상증세법에는 쟁점조항이 정하고 있는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령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출연’은 ‘금품을 내어 도와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고, 이 사건 처분 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아니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3항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종전 규정 내용 등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 ①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출연받은 재산’의 유무와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없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후에)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운용 소득으로 (사후에) 취득한 재산’이 제1항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②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의무의 기한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의미를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 ③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출연받은 재산’ 바로 옆에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괄호규정을 두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조항에서는 ‘매각대금’ 바로 옆에 괄호

**[판단]** 규정을 두어 ‘매각대금’의 범위를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속 공과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확장하고 있을 뿐,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④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운용소득’에 대한 추정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항과 같이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한편,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언에 비추어 ‘매각’이라는 관념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여 사후에 취득한 재산은 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 코멘트 ]

- 원심은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물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널리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각대금은 쟁점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 한편, 상증세법 집행기준 48-38-8(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5, 2006. 8. 10.)도 원심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심판례]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3서3235, 2024. 8. 13.

**[사안]**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A사(“쟁점법인”)의 대주주이고, 쟁점 법인은 2020. 5. 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B사를 설립함. 쟁점법인은 2021. 4. 22. 부터 2021. 5. 12.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B사 보통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방식(“공개매수”)으로 취득하였는데, 공개매수에 응한 B사 주주들에게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청구인들은 2021. 5. 17. B사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B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행위(“이 건 현물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쟁점조항”)의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법인의 이익 중 이 건 현물출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인들이 참여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한 후 이 건 현물출자는 쟁점조항에 따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상증령 제29조의 3 제1항 각 호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를 증여이익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 건 현물출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고, 일반적으로 현물출자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이 건 현물출자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 다툼이 없고, 관련 법령에 의해 신주의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인 점,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내국법인들은 경영목적상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등을 필요로 할 것인데,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 및 신주발행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B사 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것에 있어 그 통상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부의 세습 등 변칙적인 증여를 위하여 이 건 현물출자를 하였다거나 달리 조세회피의도를 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현물출자를 상증세법에 따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코멘트 ]

- 쟁점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B사에 발행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였고, 공개매수에 응한 B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및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상법」 제4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함.
-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의제거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주식 거래가액을 산정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2서7756, 2023. 2. 15.).

# 국세기본법

**[심판례]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기각)**  
 조심 2023중10020, 2024. 9. 4.

**[사안]** 청구인들은 A사(“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며, B사(“모회사”)는 2019. 12. 30 청구인들로부터 자회사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청구인들이 100% 지배하는 법인임. 청구인들은 모회사에게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수령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였고, 모회사는 취득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모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주식의 포괄적인 이전차익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한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쟁점사전답변”)을 받고,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후 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20. 12. 31. 청구인들에게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쟁점배당”)을 결의하면서 쟁점사전답변을 이유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쟁점배당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 4. 4.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결정)고지하였음.

**[판단]**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주주들(청구인들)에게 직접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대신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모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모회사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모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으로 모회사 주주들(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주회사 설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변환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모회사 주주들(청구인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과세하게 된다면 모회사 설립 없이 기존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세부담 측면에서의 큰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소득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조세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모회사 설립의 목적과 그 사업내용(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경영컨설팅),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회사의 설립은 쟁점배당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배당의 실질재원은 자본잉여금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이익잉여금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판단]**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전답변을 받았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호되어 계속 야 한다고 주장하나, 모회사가 과세당국(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청구인들에게 쟁점배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모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모회사가 가족법 인임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모회사가 사전답변 신청 시 쟁점배당에 대해 조세회피 가능성과 관련한 주요한 사실관계(특히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현금배당을 한 이후에 모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배당을 지급한 사실 등)가 포함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게 된다면 이는 국세청 법령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7호에 따른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전답변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 코멘트 ]

- 국세청은 쟁점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2021. 8. 26.)에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8조(신청대상)는 그 단서에서 사전답변 신청 제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제7호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심판례] (합동)쟁점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취소)**

조심 2023지1631, 2024. 7. 25.

**[사안]** 청구법인은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신소재·신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그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취득·이전,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및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6. 1.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소재 산업단지 내 토지(“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 3. 5. 강서구청장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78조 제4항(“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하3층·지상7층의 건축물(“이 건 건축물”,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을 2019. 11. 26. 신축하고, 2020. 1. 22. 강서구청장에게 이 건 건축물 중 연구시설부분(면적비율 92.0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 및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 중 연구시설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면적비율 7.99%)에 대하여는 이를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쟁점본점용 건축물”)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6.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쟁점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위 쟁점본점용 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연구시설부분(“쟁점연구소”)은 법인의 주요한 업무수행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추징금액을 부과처분함.

**[판단]** 지방세법상 본점의 정의는 없으나, 본점의 사무소란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 외에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연구소의 연구기능은 주요한 업무행위에 해당하며 기획, 인사, 재무 등 관리행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의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유기적 결합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신소재·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 그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획득·이전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는 점과 2020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표이사가 전반적인 경영관리와 동시에 연구총괄을 맡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할 뿐, 단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에서 연구부문과 경영관리부문이 구분되어



**[판단]** 있으며, 쟁점연구소에는 스크린도어와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경영관리부문의 사무실과 분리하여 경영관리부문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14조의 4 제1호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우 2019. 12. 13.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청을 통해 쟁점연구소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이후 그 인정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소의 직원들은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쟁점연구소가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코멘트 ]

- 행정안전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연구소가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으나, 연구개발 외에 윤리경영·경영지원BG(Business Group)·글로벌 영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쟁점 연구시설과 같은 건물에 위치)은 본점 또는 주사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부동산세제과-1026, 2023. 11. 16.).
- 대상심판례의 청구법인과 달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본점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안에서, 과거 조세심판원은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8지0175, 2018. 6. 1.).

## 관세법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 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 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4관0039, 2024. 8. 12.

**[사안]**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일본 소재 000(이하 “쟁점판매자”)와 SERVICE AGREEMENT(이하 “쟁점서비스 계약”)를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쟁점판매자가 A 주식회사 등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이하 “쟁점반도체설비”)를 국내 고객사에 설치 및 조립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임.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사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반도체설비 본체를 수입하기 이전에 동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배관 등 부품(이하 “전송품”) 및 국내 고객사가 본체를 수입한 이후에 쟁점반도체 설비 본체의 조립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부품(이하 “후송품”)이라 하고, 전송품과 후송품을 합하여 “전·후송품”)을 쟁점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일반판매용 부품 수입 시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에 적용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하 “TP”)으로 신고함. 처분청은 2020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 9. 13부터 2020. 8. 21.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입신고한 전·후송품(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1,584건, 이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TP)에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의 역할을 직접 수행할 경우 발생할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가격’(이하 “비용 및 이윤 가산방법”)으로 결정하고, 2023. 9. 13.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하였음. 청구법인은 2023. 10. 19. 처분청에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1,420건(2018. 10. 19. ~ 2020. 8. 21. 수입신고분, 부가가치세 000 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11. 23.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16.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일관되게 산정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 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코멘트 ]**

- 본 사례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사안임. 부가가치세법상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됨. 본 사례에서 처분청은 관세조사를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의견임.
- 그러나 1차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이 결정한 이전가격(TP)으로 일관되게 신고해 온 점, 처분청은 그간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매번 달리 결정하는 등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본 사례를 통하여 과거 또는 향후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한 경우가 있다면 그 쟁점과 처분의 과정에서 관세조사의 여부, 일관성, 합리성 등을 기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합리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의 권리 보호 수단인 불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 Tax Knowledge Center

###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S.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https://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